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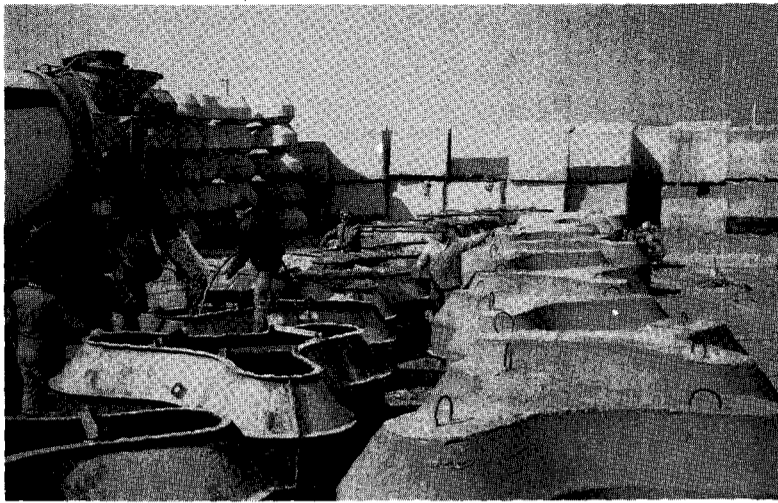
現場「레미콘」生産許容

品質책임 確認策으로

建設업체 要求 관철

시공업체에 의한 건설 현장에서의 레미콘생산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는 기존미달 레미콘사(공)인한 부실시공을 생산을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시공업체의 레미콘생산을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방지하고 품질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레미콘 생산을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용 대상, 설치방법, 설치조건, 품질관리, 통상규정,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공표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설치조건은 200톤 크리트를 비비가 시작된 후 90분 이내에 트럭믹스로 배출지점까지 운반하기가 불가능한 도저 벽지 교통체증지역과 압축강도가 4백kg이상이거나

나 슬럼프가 5cm 이하인 고강도 레미콘을 사용하여야 하는 현장이 우선대상으로 포함된다.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대상 현장은 대해서는 레미콘전문제조업체로 구성된 중소기업사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은 트럭믹크리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 기준과 관련된 항목별 배점안도안의 가감조정 등 88% 미달이로 하도급을 줄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한 규정(93년 7월 6일 이후 입찰 공고분에 한해 계약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면적이 2백㎡미만인 경우 건축법에 따라 관할시장이나 군수에 공사용시설건축물신고를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등록을 역시 해당 시장군수에 하게 하법된다.

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에 관한 회계통계를 마련·조달청을 정부 각 발주처 및 관련단체에 이를 통보하고 계약일부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당부했다.

회계통계은 또 하도급 제한과 관련, 국가계약법령 시행령(93년 7월 6일 이후 입찰 공고된 계약 체결된 공사)에 대해서 새 규정에 따라 낙찰률에 관계없이 88% 미만으로 하도급한 경우 발주처가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7월 6일 전에 공고된 계약 체결된 공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8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발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회계통계은 계약보증금 회계통계은 계약보증금을 적용과 관련,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의 10%, 불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계약금액의 10%를 가감토록 했다.

監理제도整備보완

保證·保險制 도입등 先進化 추진

건설교통부는 건설시장 개방이전까지 국내 책임감리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 보완키로 하고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감리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국내 감리업체의 기술력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게 될 새 방안으로 감리보완보증제도의 도입을 포함, 제

도선진화를 위한 시급한 면서도 실천가능한 대책이 모두 검토된다.

최근 건설부의 따르면 97년도 예정되어 있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키 위해서는 감리제도의 정비와 선진화야 한다는 판단 아래 내년 상반기중 책임감리수준을 국제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 미올해 확보된 연구개발 관련예산 13억 5천만원중 6천만원을 관련용역비로 책정, 최근 건설기술연구원과 책임감리제도 국제화 방안 연구 과제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건교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우선 선진외국의 공사관리체계와 건설현장을

실도있게 조사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감리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명확한 범위와 책임한계를 설정하는 한편 국제적수준의 단계별 공사감리체계를 마련, 건설업체도 하도급 시장개방이후의 새로운 분위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業體부터適用

機能系 97年 7月 이후施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부실발생제의 적용시기가 확정돼 업체들의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기능계를 포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1년 늦은 오는 97년 7월 1일부터 각각 불이의를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실발생제를 실제 적용키 위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해 발주를 추정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비롯한 주택건설등용역과 설계를 포함한 용역업, 기타 감리전문회사등 부실발생제의 적용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올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중의 평균 부실발생률 각각 누계 산정해 96년 7월 1일부터 97년 7월 1일까지 1년 단위로 평가한다.

5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후 하위규정이 지역제한 경쟁계약특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지역제한입찰대상범위를 공사금액 50억원미만

50億미만 地域건설업체 受注



싱싱하고 영양가 높은 수산물

수협직판장에서 찾으세요

제주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직판장

- (제주) 대표 전화 (064) 33-3501
- (제주) 수산물백화점 (064) 33-3506~7
- (제주) 남원 직판장 (064) 64-5002
- (서울) 마포 직판장 (02) 717-8921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70)

水産倉庫用地

iv) 창고용지의 소요면적을 구한다.
 건폐율을 0.6으로 하면 창고 용지의 소요면적 S는

$$S = \frac{A}{0.6} = \frac{2.267}{0.6} = 3.778(m^2)$$

로 된다. 이와함께 창고 이용에 필요한 주차장소, 용지내 도로 등의 면적을 추가하여 창고용지 면적으로 한다.

어구 창고의 배치

어구 창고는 어구의 양륙 및 적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휴게안벽에 가까운 곳 또는 휴게 안벽에서 교통편이 좋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어구를 창고에 넣을 때는 건조작업이나 수리 작업도 행해지므로 어구 건조장과 가깝게 설치하는 예도 많다. 그러나 어구 창고는 하역장이나 야적장등과는 다르고 특히 제1선 용지에 건설할 필요는 없다.

漁船修理場用地

개설

어선의 성능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작업, 정비점검, 보수 개량등 여러가지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넓은 뜻으로는 이것을 수리라 부르며 이들 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수리장이라 한다. 어선수리장에서 작업 가운데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부정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등 2가지가 있다. 그 중 부정기 작업은 어선의 파손, 고장등에 수반되는 수리 보수이고, 정기작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① 상가 도장
 상가 도장의 회수는 지역, 어선의 크기, 어선의 재질등에 따라 다르다. 목선은 상가 건조시켜 배 밑바닥에 붙어 있는 수초나 굴 조개등을 떼어내고 페인트를 칠하여, 총회수는 남부 흑조류역에서는 2~3개월에 1회, 북해도의 한류역에서는 1년에 1회정도이며 기타 지역에서는 6개월에 1회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RP선박의 경우에는 개발 당초에는 대부분 상가도장을 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거의 목선에 준하여 행해지고 있다.
 강선의 경우는 녹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도장이 불가피 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이 많고 목선이나 FRP선박에 비하여 규모가 큰 것이 많다. 목선이나 FRP선박에 비하여 상가가 곤란하므로 1년에 1회 정도의 비율로 행해진다. 특히 대형선박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때 많이 행해진다.
 ② 정기검사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 어선은 정기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i)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및 20톤 미만, 선장 12m이상으로서 해안에서 12해리를 초과하는 해면

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4년에 한번의 정기검사 및 2년에 한번의 제1종 정기검사.
 ii) 총 톤수 20톤 미만, 선장 12m미만으로서 해안에서 12해리를 초과하는 해면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6년에 한번의 정기검사 및 3년에 한번의 중간검사.
 이들 검사시에는 상가 또는 도크에 넣은 뒤 선체, 기관, 배수, 계선, 구멍, 소방등 기타의 시설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③ 개장
 한 어업의 어기가 종료하고 다른 어업으로 이행할 때 어구등의 장비를 개장할 필요가 생기는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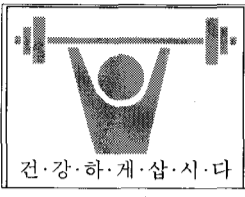
어선수리장의 규모와 용지의 소요 면적
 어선수리장의 규모 및 그 용지의 소요 면적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산정 차례에 따라 한다.

- ① 연간 수리장 사용일수를 톤수 계층별로 산정한다.
 수리장 사용일수를 D로하면 D는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D = V \times N \times d$$
 다만, V:수리장 사용 톤수
 N:연간사용회수
 d:1회당 사용일수
 ②연간 수리장 사용가능일수를 톤수 계층별로 산정한다.

$$P = (20 \sim 25) \times M$$
 다만, P:연간 수리장사용 가능일수
 20~25:1개월 당의 수리장 사용 가능 일수
 M:수리장을 사용하는 월수

「어구가 아포다」란 말인가 장을 하릴 때 말중 하나이다. 어선의 안전을 위하여 어구가 많이 필요하고, 어구가 많아질수록 어선의 안전도 높아진다. 어구가 많아질수록 어선의 안전도 높아진다. 어구가 많아질수록 어선의 안전도 높아진다.



통 요

체중조절 통해 예방가능 항상 허리와 근육운동을

고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관측되나 연골과 연골 사이를 일으키는 데 이런 퇴행성관절염은 40세 이상에서 75%나 된다고 한다.
 둘째, 추체나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 및 근육에 이상 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가장 흔한 요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공부하는 학생 또는 주부 등에서 자세가 바르지 못하여 근육의 장력을 초과하거나 인대 이 증가하면서 근육의 탄력이 감소하거나 몸이 비대하고 운동 이 부족하고 근육의 불균형으로 요통을 유발하거나 폐경 또는 노이가 들거나 기타 이상으로 뼈의 내용이나 압박 등으로 골절이 유발되고 결국 척추 협착증이 유발되므로,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우리가 흔히 디스크 추간관이라고 부르는 데 이는 추체와 추체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러 압박 요인에 의해 추간관의 파손, 주위의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 및 근육에 이상을 일으키는 요통의 원인이 된다.
 넷째, 허리와 관계없이 특히 여성에서 볼 수 있는데 임신, 월경통, 골반염, 만성골반염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요통의 원인이 근육인 경우보다 병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경근이 있는지 근신인 지 만능인지 자세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또한 여성의 경우 부인과적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것이다. 요통의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다를 것이다.

○ 1895년에 도입된 사법제도는 1995년말 현재 대법원·대검찰청, 5개 고등법원·고등검찰청, 12개 지방법원·지방검찰청, 39개 지원·지청으로 발전하였고, 1996. 3. 1에는 평택 지원·지청이, 1997. 9. 1에는 포항 지원·지청이 신설된다(법원·검찰청 관할구역 별첨).

○ 참고로, 중전 순회심판소를 시법원 또는 군법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 법원조직법이 1995. 9. 1부터 시행된다.

소액·화해·독촉·조정사건: 종래의 순회심판소 체제에서는 순회심판소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서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으나, 시·군법원이 설치되는 1995. 9. 1부터는 소액사건 등에 관하여 시·군법원에 배타적인 토지 관할권이 부여되므로,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소송이나 신청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기하면 관할위반이 된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사건: 종래의 순회심판소에서는 이혼의사 확인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으나 시·군

1995. 9. 1부터 개편법원조직 시행

관할 시·군 법원에 소송·신청 제기해야

법원은 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은 관할 지원등과 중첩적 관할이 인정되며, 시·군법원의 배타적관할은 아니다.

법원·검찰청 관할구역표

고등법원·고등검찰청	지방법원·지방검찰청	지 원·지 청	관 할 구 역
서 울	서 울	중 부	서울특별시 중부구, 중구, 성북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판악구, 동각구
		남 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북 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 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의 정 부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미주시, 고양시, 양주군, 남양주군, 파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릉도 원원군
	인 천	부 청	인천광역시,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관할시·군위에 부천시
	수 원	성 남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 과천시, 안산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화성군, 용인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위에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용인시, 광주군, 여주군, 이천군, 양평군, 양성군, 안성군, 평택군
	춘 천	강 동	강릉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강군, 삼척군
		원 주	원주시, 원주군, 횡성군, 철원군
		속 초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영 월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강군
대 천	대 천		대전직할시, 연기군, 금강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 구역은 앞의 시·군위에 공주시, 공주시, 청양군, 소년보호사건은 대전직할시, 충청남도
		충 청 북	대전시, 홍성군, 예천군, 서천군
		충 청 남	공주시, 공주군, 청양군
		강 경	논산시, 부여군
		서 산	서산시, 서산군, 태안군, 당진군
		천 안	천안시, 순천시, 원안군, 아산군
	청 주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 구역은 앞의 시·군위에 영동군, 옥천군,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북도
		충 주	충주시, 충원군, 음성군
		계 천	계천시, 제천시, 단양군
		영 동	영동군, 옥천군
대 구	대 구		대구직할시, 영천시, 경산시, 달성군,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고등법원·고등검찰청	지방법원·지방검찰청	지 원·지 청	관 할 구 역
		안 동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 구역은 앞의 시·군위에 군위군
		경 주	안동시, 영주시, 안동군, 영풍군, 봉화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 구역은 앞의 시·군위에 영양군, 의성군, 칠곡군
		강 원	김천시, 구미시, 김천군, 선산군
		강 원	강릉시, 횡성시, 강릉군, 문경군, 예천군
		의 정 부	의정부군, 군위군, 청송군
		영 덕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포 황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군, 울릉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 구역은 앞의 시·군위에 영덕군, 울진군
부 산	부 산	동 부	부산직할시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중 산	부산시, 동산군, 양산군
		소 년 부	부산직할시, 울산시, 울산군, 양산군
	광 주	광 원	광원시, 마산시, 진해시, 광안군, 함안군, 김해시, 김해군,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위에 진주시, 삼천포시, 통영시, 양산시, 진양군, 의령군, 사천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울진군, 거제군, 고성군, 밀양군,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함평군
		진 주	진주시, 삼천포시, 진양군, 사천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 구역은 앞의 시·군위에 거창군, 함양군, 함평군
		통 영	통영시, 통영군,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
		미 양	밀양시, 밀양군, 창녕군
		거 창	거창군, 함양군, 함평군
광 주	광 주		광주직할시, 나주시, 화순군, 나주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 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광군
		강 원	강릉군, 강진군
		순 천	순천시, 여주시, 영천시, 동광양시, 송주군, 여천군, 평양군, 구례군, 고령군, 고창군
		해 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 년 부	광주직할시, 전라남도 전주시, 강제시,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 진안군, 무주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 구역은 앞의 시·군위에 남원시, 남원군, 강주군, 순창군,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북도
		군 산	군산시, 이리시, 옥구군, 익산군
		정 음	정주시, 정읍군, 부안군, 고창군
		남 원	남원시, 남원군, 김구군, 순창군
		계 주	계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 부천지원·지청 신설은 '95.3.1. 평택지원·지청 신설은 '96.3.1. 포항 지원·지청 신설은 97.9.1자로 각 시행함.
 * 법원·검찰청의 관할구역은 '94.12.1. 현재임.

생 활 법 률

생 활 법 률